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최용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81
----------	------

발의연월일 : 2003. 12. 5.

발 의 자 : 최용규 · 강봉균 · 김근태 · 김덕규
 김덕배 · 김명섭 · 김부겸 · 김성호
 김영춘 · 김원기 · 김원웅 · 김태홍
 김택기 · 김희선 · 남궁석 · 문석호
 박병석 · 배기선 · 설송웅 · 송석찬
 송영길 · 송영진 · 신계륜 · 신기남
 안영근 · 유시민 · 유재건 · 이강래
 이상수 · 이부영 · 이우재 · 이원성
 이종걸 · 이창복 · 이해찬 · 이호웅
 임종석 · 임채정 · 장영달 · 정대철
 정동영 · 정동채 · 정세균 · 정장선
 천용택 · 천정배 · 홍재형 · 이낙연
 이정일 · 정범구의원 (50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현행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 등은 피감호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태도 구금위주의 형벌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사회보호법 자체도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위험한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어 위험적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사회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보호감호처분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감호처분을 받거나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중 그 집행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집행을 종료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3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전 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조제3항·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제5조의4·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②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③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保護監護所·拘置所 및 矯導所”를 “구치소 및 교도소”로 한다.

④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치료보호법에 의한 지정치료보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⑤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치료보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중에 있는 자

⑥방송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보호법에 의한 치료보호의 집행중에 있는 자

⑦보안관찰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징역·금고·구류·노역장유치 또는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의 집행중”을 “징역·금고·구류·노역장유치중”으로 한다.

⑧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을 “치료보호, 선고유예, 보호관찰”로 하고, 제6조제1항제3호중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를 “치료보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로 한다.

⑨출입국관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중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또는 소년원”을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지정치료보호시설 또는 소년원”으로, “형의 집행정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된 때, 보호감호처분 또는 치료

감호처분을 받고 수용된 후 출소한 때”를 “형의 집행정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된 때, 치료보호처분을 받고 퇴원한 때”로 각각 한다.

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을 “치료보호처분”으로 한다.

⑪국가인권위원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를 “지정치료보호시설”로 한다.

⑫부패방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제2항제2호 중 “(보안처분 보안관찰처분 보호처분 보호관찰처분 보호감호처분 치료감호처분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를 “(보안처분 보안관찰처분 보호처분 보호관찰처분 치료보호처분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로 한다.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최용규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2004. 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임종훈

이 법안은 2003년 12월 5일 최용규의원 등 5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되어 다음날인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현행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 등은 피감호자의 입장에서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태도 구금위주의 형벌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사회보호법 자체도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위험한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어 위헌적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2. 검토의견

이 법안은 앞에서 검토한 서상섭의원 대표발의의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는 폐지하되 동법상의 치료감호제도는 대체입법을 통하여 존속시키자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상섭의원 대표발의의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료보호법안

(최용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80
----------	------

발의연월일 : 2003. 12. 5.

발 의 자 : 최용규 · 강봉균 · 김근태 · 김덕규
김덕배 · 김명섭 · 김부겸 · 김성호
김영춘 · 김원기 · 김원웅 · 김태홍
김택기 · 김희선 · 남궁석 · 문석호
박병석 · 배기선 · 설송웅 · 송석찬
송영길 · 송영진 · 신계륜 · 신기남
안영근 · 유시민 · 유재건 · 이강래
이상수 · 이부영 · 이우재 · 이원성
이종걸 · 이창복 · 이해찬 · 이호웅
임종석 · 임채정 · 장영달 · 정대철
정동영 · 정동채 · 정세균 · 정장선
천용택 · 천정배 · 홍재형 · 이낙연
이정일 · 정범구의원 (50인)

제안이유

현행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이 있고 그 집행 실제에 있어서도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아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인하여 방치될 수밖에 없게 된 치료감호대상자인 정신질환범죄자 등에 대하여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그의 사회복귀를 돕고 정신질환자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범죄행위를 하였으나 심신장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거나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죄의 확정판결 또는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치료보호대상자로 함(안 제2조제3호).
- 나.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거나, 치료보호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그의 정신장애상태를 치료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치료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음(안 제6조).
- 다. 검사는 피의자가 심신장애로 치료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보호를 청구할 수 있음(안 제7조).
- 라. 검사는 피의자가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치료보호청구만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 마. 법원은 치료보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치료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청구기각을 하여야 함(안 제16조).
- 바. 법원은 치료보호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과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관찰의견을 참조하

- 여야 함(안 제17조제1항).
- 사. 치료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결정에 관계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안 제21조).
- 아. 치료보호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판사가 지정한 지정치료보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함(안 제23조제1항).
- 자. 치료보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보호를 먼저 집행함. 이 경우 치료보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하되 잔여 형기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안 제28조).
- 차. 검사는 보호구속되지 아니한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집행하기 위하여 피치료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고, 피치료보호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치료보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음(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 카. 심의위원회는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후 매 6월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후 매 6월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함(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 타.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치료보호가 가종료된 때 및 피치료보호자가 치료보호시설 외에서 치료받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위탁된 때 보호관찰이 개시됨(안 제33조제1항).
- 파.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가 종료됨(안 제36조제1항).

- 하. 치료보호처분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5인의 위원과 정신과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9조제1항 및 제2항).
- 거.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은 치료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은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치료보호자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48조).
- 너. 피치료보호자, 그의 보호자 및 보조인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피치료보호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음(안 제50조).
- 더. 치료보호를 집행하는 자가 피치료보호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안 제59조제1항).
- 러. 타인으로 하여금 치료보호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60조).

치료보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 또는 마약류·알코올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와 처우를 위한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그의 개선과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여 사회복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신장애”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非精神病的)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정신보건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를 말한다.
3. “치료보호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였으나 심신장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거나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죄의 확정판결 또는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가. 형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규정한 행위

나. 형법 제164조 내지 제167조, 제169조, 제172조 내지 제173조 및 제174조에 규정한 행위

다. 형법 제177조 내지 제180조 및 제182조 내지 제184조에 규정한 행위

라. 형법 제185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및 제191조에 규정한 행위

마. 형법 제194조 내지 제197조에 규정한 행위

바. 형법 제207조 및 제214조 내지 218조에 규정한 행위

사.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5조 및 제257 내지 262조에 규정한 행위

아. 형법 제276조 내지 제281조에 규정한 행위

자. 형법 제287조 내지 제293조에 규정한 행위

차. 형법 제297조 내지 제302조 및 제305조에 규정한 행위

카. 형법 제329조 내지 제343조에 규정한 행위

타.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12조에 규정한 행위

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4조의2에 규정한 행위

4. “치료보호사건”이라 함은 제7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과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5. “지정치료보호시설(指定治療保護施設)”이라 함은 피치료보호청구인 및 피치료보호자를 수용하여 치료·관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할) ①치료보호사건의 토지관할은 처우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②치료보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로 한다. 이 경우 치료보호를 청구한 치료보호대상자(이하 “피치료보호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한 치료보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할이 다른 때에는 치료보호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제4조(이송) ①법원은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관할에 속하는 치료보호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법원은 치료보호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의 병합) 법원은 동일한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수 개의 치료보호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제2장 치료보호사건의 절차 등

제6조(치료보호) 법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청구가 있거나,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그의 정신장애상태를 치료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치료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

제7조(검사의 치료보호의 청구) ①검사는 피의자가 심신장애로 치료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②검사는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청구함에 있어서 치료보호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치료보호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치료보호청구인의 성명 그 밖에 피치료보호청구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법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제1심판결의 선고전까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청구를 할 수 있다.

⑤법원은 치료보호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치료보호청구서의 부분을 피치료보호청구인, 피치료보호청구인의 보호자 또는 보조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보호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피고사건심리중에 치료보호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보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된 당해 사건을 치료보호사

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치료보호청구인에게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그를 보호구속할 수 있다.

제8조(조사) ①검사는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의 심신장애상태를 참작하여 치료보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치료보호영장) ①검사는 피치료보호청구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치료보호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보호구속(보호구금과 보호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정신보건법에 의해 보호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그의 심신장애의 상태에 비추어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
2.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3.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4.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치료보호영장을 발부받아 보호대상자를 보호구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관할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보호영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구속 등) ①치료보호영장이 발부된 피치료보호청구인은 즉시 관할 법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정치료보호시설에 보호구속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속은 각각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치료보호청구인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 10일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속에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02조 내지 제205조 및 제2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호구속된 피치료보호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보호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법중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치료보호영장에 의하여 보호구속된 피의자”로, “체포 또는 구속”을 “보호구속”으로 각각 본다.

⑤보호구속된 피치료보호청구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4조 및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치료보호의 독립청구) 검사는 피의자가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치료보호청구만을 할 수 있다.

제12조(치료보호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 등) ①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보호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치료보호영장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보호를 청구한 피치료보호청구인을 즉각 가장 가까운 지정치료보호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3조(피치료보호청구인의 불출석) 피치료보호청구인이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로 공판기일에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치료보호청구인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제14조(공판절차로의 이행) ①법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청구사건의 공판개시후 피치료보호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공판절차로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료보호를 청구한 때에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치료보호청구서는 공소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공판절차이행전의 심리는 공판절차에 의한 심리로 보고, 치료보호영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공소장에 기재할 사항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규

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판절차로 이행된 사건의 피고인이 치료보호영장에 의하여 보호구속된 경우에는 그 신병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피고인의 이송을 법원사무관에게 명하거나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공판내용의 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출석없이 친행된 공판의 내용은 공판조서의 낭독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치료보호의 결정 등) ①법원은 치료보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치료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청구기각을 하여야 한다.

②치료보호사건의 결정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보호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피치료보호자가 치료보호를 받아야 할 지정치료보호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호, 제32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328조제1항 각호(제2호 후단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치료보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치료보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전문가의 감정 등) ①법원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때에는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과 정신보건법 제7조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관찰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의뢰받은 정신과 전문의 및 의견을 의뢰받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은 당해 감정서 또는 관찰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치료보호청구인의 병상(病狀)에 기초하여 치료보호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청구의 각하) ①법원은 검사가 피치료보호청구인에 대하여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1. 피치료보호청구인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2. 피치료보호청구인이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가 아닌 경우
3. 그 밖에 치료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결정에 관계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다시 제7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9조(범죄행위존부에 대한 심리의 특칙) ①법원은 보호대상자에 대

하여 제7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청구가 있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8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부에서 심리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처우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를 하는 동안 처우사건을 종국시키는 결정(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각하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제20조(항고 등) ①검사 또는 피치료보호청구인, 피치료보호청구인의 보호자,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②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치료보호사건의 결정에 대하여도 항고 및 항고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결정의 효력)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결정에 관계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조(보조인) ①치료보호청구인의 보호자, 변호사는 치료보호청구사건의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법원은 피치료보호청구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 그의 심신장애의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호사를 보조인

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장 치료보호의 내용 및 지정치료보호시설

제23조(치료보호의 내용) ①치료보호의 결정을 받은 자(이하 “피치료 보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치료보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②치료보호시설에의 수용은 치료보호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의 기간 이내에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피치료보호자의 심신이 더 이상 보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여 치료보호의 종료 또는 가 종료(假終了)의 결정을 할 때까지로 한다.

제24조(지정치료보호시설의 지정) 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치료보호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국공립의료 시설 또는 정신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정신요양시설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신요양시설을 지정치료보호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그 시설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지정치료보호시설에는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④국가는 지정치료보호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시설의 기준, 운영, 치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정의 사퇴) ①지정치료보호시설의 지정을 받은 정신요양시설이 그 지정을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퇴일로부터 1년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퇴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퇴의사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의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정을 철회하고 이를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지정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지정치료보호시설이 이 법에 의한 치료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과 의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치료보호처분의 집행

제27조(집행지휘) ①치료보호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제28조(집행순서 및 방법) 치료보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보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보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하되 잔여 형기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치료보호내용 등의 공개) 이 법에 의한 치료보호의 내용과 실행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보호대상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소환, 치료보호집행) ①검사는 보호구속되지 아니한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집행하기 위하여 피치료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다.

②피치료보호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치료보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치료보호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치료보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

④치료보호집행장은 치료보호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1조(가종료 등의 심사·결정) ①심의위원회는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후 매 6월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②심의위원회는 가종료 또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치료위탁된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후 매 6월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한다.

제32조(치료의 위탁) ①심의위원회는 심신장애자 등이 치료보호만을 선고받고 치료보호시설에 수용된 후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호자에게 지정치료보호시설외에서의 치료를 위

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치료보호와 형이 병과되어 형기상당의 치료보호를 집행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호자에게 지정치료보호시설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의 위탁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치료보호자의 보호자로부터 지정치료보호시설외에서의 입원·치료를 보증하는 뜻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치료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은 피치료보호자 또는 그의 보호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해 피치료보호자 또는 그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보호자가 국가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비용보조신청과 심사는 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그 절차, 심사의 기준 및 경비보조내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호관찰

제33조(보호관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보호관찰이 개시된다.

1.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치료보호가 가종료된 때
2.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피치료보호자가 치료보호시

설외에서 치료받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위탁된 때

②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계속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결정으로 보호관찰기간을 1차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보호관찰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심의위원회의 치료보호의 종료결정이 있는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④보호관찰이 개시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가 다시 치료보호의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된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제34조(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①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치료 그 밖에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제35조(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의무) 피보호관찰자 또는 그 보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의 가중료 또는 종료후의 거주예정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치료보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고 가중료 또는 종료후 10일 이내에 주거, 직업, 치료를 받는 병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치료보호의 집행면제 등) ①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피

보호관찰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가 종료된다.

②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한 때에는 치료보호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37조(가중료 취소와 치료보호의 재집행) 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가중료 또는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고 다시 치료보호를 집행할 수 있다.

1. 제34조의 준수사항 그 밖에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감독에 위반한 때
2.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피보호관찰자가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호관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제6장 치료보호심의위원회

제39조(치료보호심의위원회) ①치료보호처분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5인의 위원과 정신과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보호종료여부에 관한 사항
2.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감독과 그 위반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3.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위탁경비보조신청에 관한 심사 및 결정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⑤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사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에서 해촉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의료법, 약사법, 정신보건법 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심의위원의 해촉) ①법무부장관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태만·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심의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42조(심사) ①심의위원회는 심사자료에 의하여 제39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보호자(피치료보호자 및 피보호관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관계자를 직접 소환·심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피보호자 그 밖에 관계자의 소환·심문 및 환경조사
2. 국·공립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민간단체에의 조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④피보호자 그 밖의 관계자는 조사공무원의 소환·심문 및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국·공립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민간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나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유해한 것이 아니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3조(의결 및 결정)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소장으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참조하여야 한다.

③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피치료보호자의 담당 의사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피치료보호자의 상태 및 예후 그리고 치료보호종료의 타당성 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제44조(심의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심의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사건에 관한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위원이 당해 피치료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심의위원이 당해 치료보호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심의위원이 피치료보호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심의위원이 당해 치료보호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피치료보호자, 그의 보호자 또는 보조인은 심의위원에게 심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5조(검사의 심사신청) ①피보호자의 주거지(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주거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제39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에 그 심사·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에 심사신청서 및 신청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치료보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치료보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검사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피치료보호자 등의 심사신청) ①피치료보호자와 그의 보호자 및 보조인은 피치료보호자가 치료보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심의위원회에 치료보호의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에 심사신

청서 및 심사신청이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치료보호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7장 피치료보호자의 수용 및 감독

제47조(지정치료보호시설의 의무)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은 피치료보호자의 치료와 보호 및 관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행동제한 등)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은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치료보호자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피치료보호자의 전화통화 및 서신수발, 보호자 및 보조인과의 면담은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나 담당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49조(무단퇴원자에 대한 조치) ①피치료보호자가 무단으로 지정치료보호시설에서 퇴원하려 하거나 퇴원한 때에는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직원이 이를 제지하거나 무단퇴원한 피치료보호자를 귀환조치시켜

야 한다.

②지정치료보호시설의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지 또는 귀환조치를 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이 관찰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무단으로 퇴원한 피치료보호처분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당해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당해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에게 신병을 인도할 때까지 그 자를 경찰서 또는 피치료보호자를 보호하기 적당한 시설에 유치할 수 있다.

제50조(처우개선청원) ①피치료보호자, 그의 보호자 및 보조인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피치료보호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의 제기, 청원의 심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운영실태 등 점검 및 개선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 3월마다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3조(개선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의 검토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에게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54조(치료보호청구의 시효) ①치료보호청구의 시효는 치료보호청구된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의 경과로 완성된다.

②치료보호청구된 사건은 결정의 확정 없이 치료보호청구가 있을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제55조(치료보호의 시효) ①피치료보호자는 그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된다.

②시효는 치료보호의 가중료 그 밖에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시효는 피치료보호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제56조(치료보호처분과 자격정지) 치료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그 치료보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다른 법률에 의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업무에 관한 자격

제57조(기간의 계산) ①치료보호처분 및 보호관찰의 기간은 그 처분을

집행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치료보호처분 및 보호관찰의 집행에 위반한 기간은 처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8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①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치료보호처분사건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군사법원은 법원, 군검찰부검찰관은 검사,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②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치료보호처분의 관리와 그 집행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치료보호위원회를 둔다.

③군치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보호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군사법원, 군검찰부검찰관 또는 군치료보호위원회는 치료보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치료보호처분사건을 대응하는 법원·검사 또는 보호위원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조사·청구·재판·신청·심사 및 결정은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⑤법원·검사 또는 보호위원회는 치료보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치료보호처분사건을 대응하는 군사법원·군검찰부검찰관 또는 군보호위원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조사·청구·재판·신청·심사 및 결정은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59조(다른 법률의 준용) 치료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벌칙

제60조(도주방조 등) ①치료보호를 집행하는 자가 피치료보호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치료보호를 집행하는 자가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의 위탁을 받은 보호자가 피치료보호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허위사실의 신고) 타인으로 하여금 치료보호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2조(모해 등) 치료보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치료보호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형법 제15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제63조(허위진단서작성 등) 치료보호처분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154조·제233조 또는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사회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치료감호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치료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치료감호시설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보호법상의 치료감호시설과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지정치료보호시설과 그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군사회보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보호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회보호위원회는 이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군치료보호위원회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社會保護法에 의한 監護”를 “치료보호법에 의한 치료보호”로 한다.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保護監護所·治療監護所(社會保護法 附則 第4條의 규정에 의하여 治療監護施設로 代用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支所의 長은 당해 監護所 또는 그 支所내에서”를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은 당해 지정치료보호시설 내에서”로 하고, 제5조제2의2호중 “保護監護所·治療監護所 또는 그 支所의 長”을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으로 한다.

③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제1항제5호중 “社會保護法에 의한 保護監護施設 또는 治療監護施設”을 “치료보호법에 의한 지정치료보호시설”로 한다.

④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6호중 “社會保護法에 의한 保護處分”을 “치료보호법에 의한 치료보호 또는 보호관찰”로 한다.

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社會保護法에 의한 保護處分”을 “치료보호법에 의한 치료보호 또는 보호관찰”로 한다.

⑥출입국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중 “保護監護所·治療監護所 또는 少年院의 長”을 각각 “지정치료보호시설 또는 少年院의 長”으로 하고, 제84조제2항중 “保護監護處分 또는 治療監護處分을 받고 收容된 후 出所한 때 또는 少年法에 의하여 少年院에 收容된 후 退院한 때”를 “치료보호법에 의하여 지정치료보호시설에 수용되거나 少年法에 의하여 少年院에 收容된 후 退院한 때에는”으로 한다.

⑦국가인권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가목중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를 “지정치료보호시설”로 한다.

⑧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중 “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을 “치료보호처분”으로 한다.

⑨부패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제2항제2호중 “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을 각각 “치료보호처분”으로 한다.

⑩행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治療監護所”를 “지정치료보호시설”로 한다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83
----------	------

발의연월일 : 2003. 12. 6.

발 의 자 : 이주영 · 강신성일 · 강재섭
권기술 · 권영세 · 권철현
권태망 · 김광원 · 김무성
김성조 · 김용학 · 김학송
도종이 · 박시균 · 박종근
박종희 · 백승홍 · 송광호
신경식 · 양정규 · 원유철
윤경식 · 이근진 · 이성현
이양희 · 이원형 · 이운성
이해구 · 이해봉 · 임인배
장광근 · 전용학 · 정창화
홍문중 · 황우여 의원
(35인)

제안이유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는 피감호자를 교육 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토록 하자는 것이나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가 행형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수용자와 큰 차이가 없으며,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가 사회복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등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될 여지가 있고, 상습범 및 누범에 의한 형벌가중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보호감호제도를 두는 것은 과잉처벌금지원칙에 위배

될 수 있어 그동안 인권침해 및 위헌성 여부가 끊이지 않았음.

이러한 인권침해문제와 위헌소지를 없애고 일정 범 죄 행위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사회보호법을 폐지함.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법률 제5179호 사회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보호감호처분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감호처분을 받아 그 집행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집행을 종료하고, 보호관찰 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수강명령에 근거한 교육훈련과목, 훈련장소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호감호소장이 결정, 통보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3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전 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동법 제287조 내지 제289조·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동법 제297조 내지 제303조·제305조의 죄, 동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동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동법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제3조제3항·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제5조의4·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②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③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保護監護所·拘置所 및 矯導所”를 “구치소 및 교도소”로 한다.

④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중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나 사회보호

제9조제1항제5호중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나 사회보호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중에 있는 자”를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감명령을 받고 교육훈련중에 있는 자”로 한다.

⑤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중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수감명령·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⑥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6호중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중에 있는 자”를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감명령의 집행중에 있는 자”로 한다.

⑦부패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제2항제2호중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을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수감명령·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2004. 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임종훈

이 법안은 2003년 12월 6일 이주영의원 등 3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되어 같은 달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는 피감호자를 교육·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토록 하자는 것이나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가 행형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수용자와 큰 차이가 없으며, 피감호자에 대한 처우가 사회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등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될 여지가 있고, 상습범 및 누범에 의한 형벌가중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보호감호제도를 두는 것은 과잉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그동안 인권침해 및 위헌성여부가 끊이지 않았음.

이러한 인권침해문제와 위헌소지를 없애고 일정 범죄 행위자들의 원활한 사회복지를 돕기 위하여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검토의견

이 법안은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가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되고 과잉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사회보호법을 폐지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그러나 다른 법안들과 달리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별도의 대체입법이 발의되지 않아서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만을 폐지하자는 입장인지 아니면 치료감호제도까지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는 입장인지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안 부칙 제2조제1항에 사회보호법폐지 당시의 피보호감호자는 보호감호의 집행을 종료하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및 수감명령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같이 발의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서는 법원이 보호감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호관찰이나 수감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는바, 보호감호제도의 완전폐지가 아니라 보호관찰제도로 완화시키자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 부칙 제2조제1항의 경과규정과 같이 지금까지 수용생활을 해온 피보호감호자를 다시 3년의 보호관찰대상자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사실상 보호감호집행이 종료된 피보호감호자에게 다시 보호관찰을 개시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이중처벌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는 상황에서 다시 제3의 보안처분을 가하는 것은 사회보호법 폐지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외에는 이 법안의 경우도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 폐지가 주된 내용인바, 이에 관한 검토의견은 서상섭의원 대표발의의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保護觀察等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84
----------	------

발의연월일: 2003. 12. 6.

발 의 자: 이주영 · 강신성일 · 강재섭
권기술 · 권영세 · 권철현
권태망 · 김광원 · 김무성
김성조 · 김용학 · 김학송
도종이 · 박시균 · 박종근
박종희 · 백승홍 · 신경식
양정규 · 원유철 · 윤경식
이근진 · 이성현 · 이양희
이원형 · 이윤성 · 이해구
이해봉 · 임인배 · 장광근
전용학 · 정창화 · 홍문중
황우여 의원(34인)

제안이유

사회보호법의 폐지와 더불어 종전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대상자에 대해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출소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복귀를 용이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누범이나 상습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보호

관찰처분 및 수감명령의 대상자가 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5호·제2항제4호).

나. 누범이나 상습범에 대한 보호관찰은 그 기간을 3년으로 하며, 수감명령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안 제30조제6호 및 제59조제2항).

다. 누범이나 상습범에 대한 수감분야와 장소는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직업교육 등을 위주로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도소장이 지정토록 함(안 제59조제5항).

라. 취업 등으로 더 이상 수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때에는 수감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2호).

법률 제 호

保護觀察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保護觀察등에 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

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나.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제3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수감명령을 받은 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실형 및 동종·유사죄) ①제3조에서 “실형”이라 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경우의 형을 말한다.

②제3조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 함은 전후의 범죄관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죄명이 같은 경우
2. 형법 각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의 경우
3. 형법 각칙에 규정된 죄와 그 가중처벌에 관한 죄의 경우
4. 형법 이외의 같은 법률에 규정된 죄의 경우
5. 형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죄와 그 가중처벌에 관한 죄의 경우
6.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제2절의 제목 “刑의 宣告猶豫 및 執行猶豫와 保護觀察”을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및 실행선고와 보호관찰”으로 한다.

제30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3년

제5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원은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감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제2항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직업교육등을 위주로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도소장이 지정한다.

제63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취업 등으로 더 이상 수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때

제9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조제1항제5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처분과 수감명령을 받은 자가 보호관찰이나 수감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 표]

1. 형법

가.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2조(제287조 내지 제 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제297조 내지 제303조, 제305조의 죄

다.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라.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

에 한한다)의 죄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죄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3條(對象者) ①保護觀察을 받을 者(이하 "保護觀察對象者"라 한다)는 다음 各號와 같다.</p> <p>1. ~ 4. (생략)</p> <p><신설></p>	<p>第3條(對象者) ①-----</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p> <p>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p> <p>나.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社會奉仕 또는 受講을 하여야 할 者(이하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라 한다)는 다음 各號와 같다.</p> <p>1. ~ 2. (생략)</p> <p><신설></p>	<p>②-----</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수감명령을 받은 자</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3. (생략)</p>	

< 신 설 >

제3조의2(실형 및 동종·유사죄) ①

제3조에서 “실형”이라 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경우의 형을 말한다.

②제3조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 함은 전후의 범죄관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죄명이 같은 경우
2. 형법 각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의 경우
3. 형법 각칙에 규정된 죄와 그 가중처벌에 관한 죄의 경우
4. 형법 이외의 같은 법률에 규정된 죄의 경우
5. 형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죄와 그 가중처벌에 관한 죄의 경우
6.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第3章 保護觀察

第2節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및 실형선고와 보호관찰

第3章 保護觀察

第2節 刑의 宣告猶豫 및 執行猶豫와 保護觀察

第30條(保護觀察의 기간) 保護觀察

對象者는 다음各號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保護觀察을 받는다.

1. ~ 5. (생략)

< 신 설 >

6. (생략)

第59條(社會奉仕命令·受講命令의 범위)

①法院은 刑法 第62條의2의 規定에 의한 社會奉仕를 명할 때에는 500時間, 受講을 명할 때에는 200時間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신 설 >

< 신 설 >

- ② (생략)

第30條(保護觀察의 기간) -----

1. ~ 5. (현행과 같음)
6.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3년
7. (현행 제6호와 같음)

第59條(社會奉仕命令·受講命令의 범위) ①-----

----- < 단서 삭제 >

②법원은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장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⑤제2항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직업교육등을 위주로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교도소장이 지정한다.

第63條(社會奉仕·受講의 종료)

第63條(社會奉仕·受講의 종료) 社會奉仕·受講은 社會奉仕·受講命令對象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1. (생략)

<신 설>

2. ~ 4. (생략)

第99條(罰則) ① (생략)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취업 등으로 더 이상 수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때

3. ~ 5. (현행 제2호 내지 제4호와 같음)

第99條(罰則) ① (현행 본문과 같음)

②제3조제1항제5호 및 동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보호관찰처분과 수감명령을 받은 자가 보호관찰이나 수감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4 대명엔스빌2. 1103호 성명 : 조석영 외 316인
건명	사회보호법폐지에관한청원
소개년월일	2004년 2월 3일

○ 청원의 취지

「사회보호법폐지에관한청원」은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의 조속한 심의 및 의결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보호법」은 1980년 군부정권 시절 만들어진 법으로 감호자들의 인권 침해 및 이중처벌이라는 비난이 많아 사회적으로 폐지여론이 높습니다.

이 법의 폐지에 관한 법률도 현재 3건이나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상정되고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보호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권고, 감호소 재소자 450여명의 단식투쟁 등 전근대적 악법인 사회보호법 폐지를 제16대 국회에서 처리해야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청원자 317명은 모두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를 받은 가출소자들입니다. 이들은 청송보호감호소 생활이 교도소와 다를 바 없어 명백히 이중처벌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청원자들이 무연고자, 또는 가출소 후 일정한 거소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어서 청원명단의 작성시 부득이하게 주소를 쓰지 못하고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2월 제245회 국회(임사회)에서는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의 상정 및 의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소개이유

사회보호법 상의 보호감호제도는 그동안 이중처벌에 의한 인권유린이라는 비난을 받아왔고, 또한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100인 법률가 선언',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폐지의견' 및 국회에서의 3건의 폐지법률안 발의로 이미 폐지 여론이 대세입니다.

보호감호제도의 기본권침해, 이중처벌 및 적법절차 위배 등의 위헌적 요소와 이미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된 외국의 여러 사례들뿐만 아니라, 보호감호자들의 재범율이 교도소 출소자의 2배에 달해 사회보호법의 본래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를 감안하여 불 때 사회보호법의 폐지가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건의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국회의 업무태만이자 국민 앞에 부끄러운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3년 10월 대정부질문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사회보호법폐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의견을 물은 바 있고, 이에 대해 심도깊은 검토를 하겠다는 장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법률안의 처리는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은 이번 임시회 중에 반드시 처리되어야만 하는 법안으로 사료되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 의견

이제 16대 국회의 공식일정은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의원들께서는 지난 4년의 성과에 대하여 정리하고 돌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국회법상의 법안의결절차는 법안의 제출 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의결하게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됩니다.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치 못하게 되어 16대 국회임기 만료 후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의정활동으로 이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사회보호법폐지를 이루어내어 진정한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와중에도 심도깊은 토의와 심의를 거쳐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의 조속한 심의를 요구하는 청원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개의원 정 범 구 (인)

사회보호법 폐지에 관한

청 원 서

청 원 인 : 청송보호감호소 가출소자 316명

국회의장 귀하

저희들은 청송보호감호소를 가출소(假出所)하여 현재 보호관찰(保護觀察)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청원서는 저희들의 과거 범법행위에 대한 참회와 앞으로 자신과 가족과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담아 드리는 굳은 결의이자 감호자와 가출소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우선 국회의장님 이하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멸시(蔑視)와 천대(賤待)의 대상이었던 청송보호감호소 감호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회보호법의 문제점을 국회의 각 정당이 진지하게 검토하신 덕분에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안'이 3건이나 법사위원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보호법이 생긴 이래 이처럼 진지하게 보호감호의 문제점에 관심을 기울여 연구한 국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은 법사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채 이제 폐기될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으니 다시 한 번 절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사회시민종교단체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고 정부까지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감호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를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주제넘은 말이 될 것입니다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보호감호는 가정과 가족을 붕괴시킵니다.

가. '보호감호'라는 이름의 '이중의 감옥살이'를 하던 '감호자'들은 단순히 한 사람의 '감호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는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감호자들이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우리 가족들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선량한 국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호자의 가족'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국가와 사회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으며 국가가 감호자에게 다하지 못한 책임을 강요받기까지 했습니다.

나. 감호자의 가족들은 저희 감호자들이 감호소를 출소하는 순간까지도 '신원보증'과 '취업보증'이라는 명분으로 저희들의 사회정착을 책임지라고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가출소하여 3년 동안 받아야 하는 보호관찰은 저희들의 가족이 받아야 하는 감시(監視)이며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온갖 멸시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간입니다. 언제든지 가출소를 취소하여 다시 감호소에 구금할 수 있다는 것은 가출소자 당사자에게도 또 다른 '자유형(自由刑)'이지만 결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는 정신적인 고문(拷問)이나 마찬가지로 결국 보호관찰 기간 3년이 끝날 때까지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합니다. 이런

보호관찰은 감호소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돕는 제도가 아니라 어렵게 취직한 직장에서 쫓겨나는 구실이 되고 가출소자와 가족 간에 감시(監視)하고 불신하게 하며 결국에는 가족 간의 반목(反目)만 조장할 뿐입니다.

다. 저희들로 인해 저희들의 가족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감수해야 하고 국가가 다하지 못한 '사회정착'의 책임까지 떠맡아 국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곧 저희 가족까지도 사회로부터 매장시키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보호감호는 감호자가 보호감호소 수용 중일 때도 가족들의 보살핌이나 경제적인 지원이 없이는 보호감호소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감호자 가족들의 고혈(膏血)을 빨았고, 가출소한 이후에도 철저하게 가족들에게 감호소 가출소자의 사회정착에 대한 책임을 강요하고 있어서 가족과 가출소자 간의 원만한 가족관계를 방해하고 있으며 가족애(家族愛)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라. 감호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이혼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감호자 대부분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고, 범죄자 대부분이 결손(缺損)가정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감호자 아내의 가출이나 자녀의 탈선, 가정의 붕괴 등은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상당한 우려를 안고 있는 것으로서 보호감호는 결국 잠재적으로는 범죄를 양산하는 구실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보호감호는 무연고자의 인권을 유린합니다.

가. 저희 가출소자 중에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無緣故者)가 많습니다. 고아로 자란 것이 어찌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겠으며 조실부모(早失父母)한 것이 어찌 자신의 탓이었습니까. 무연고자들은 보호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도 보살펴 주는 가족 없어서 강제노동역이나 다름없는 작업을 하고 한 달에 고작 3만원 안팎의 근로보상금으로 만족해야 했고 그 보잘것없는 돈으로 당장 감호소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몇 푼의 돈을 모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가출소를 앞두고는 '신원보증'과 '취업보증'이라는 명목으로 과거의 모든 전과와 감호자의 신분을 고스란히 드러내놓고 낮모르는 사람에게 '신원보증'과 '취업보증'을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합니다. 이로 인하여 가출소 후 사회생활이나 취업현장에서 부당한 노동을 강요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불필요한 의심을 받아야 하며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와 모멸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저희 무연고자들은 모아둔 돈도 없고 돌아갈 부모형제도 없으니 가출소를 해도 또 다른 수용시설이나 길거리를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갱생보호소'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용시설로 수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활동이나 종교의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신이 일하고 번 돈까지도 강제로 관리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제 3의 감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 그나마 그런 수용시설이라도 갈 수 있는 가출소자는 자고 먹는 것이라도 해결이 된 셈

이니 그마저도 감지되지 합니다. 먹고 자는 것만이라도 해결을 하기 위하여 눈물을 머금고 수용시설에 가려고 신청을 해도 국가의 수용시설은 포화상태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용시설은 종교에 따라 출소자를 선별하여 받거나 수용인원이 초과되어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라. 저희 감호소 가출소자 중 일부는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원인이 전적으로 당사자에게만 있다고는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할 것이며 법무부도 보호감호가 잘못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보호감호소 출소자들이 재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무일푼이나 다름없는 몸으로 수 년, 십 수 년 만에 이 냉정한 사회에 내동댕이쳐진 가출소자들에게 사회에 정착할 기간 동안만이라도 의식주(衣食住)를 걱정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두 범죄의 길로 들어섰겠습니까. 당장 어디에 일을 하러 가고 싶어도 일을 하고 돈을 받을 때까지라도 먹고 살 수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 보호감호의 폐지는 감호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일입니다.

가. 보호감호소를 출소한 이상 저희들이 보호감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살면 보호감호는 저희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도가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일당은 자신이 '보호감호소 가출소자'라는 신분을 드러내면서까지 이렇게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를 폐지시켜 달라는 청원서를 드리는 것은 보호감호제도가 결코 국가와 사회, 개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일 뿐 아니라 제2, 제3의 감호자를 막는 것이 양심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사회생활을 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과자'라는 이유로 덩으로 감옥살이를 하고 그 이후에도 두고두고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 그쳐야 합니다.

나. 저희 보호감호소 가출소자들이 사회의 진정한 일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들의 자유와 권리·의무를 되찾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자유와 권리·의무는 단순히 저희 감호소 가출소자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친지와 지인,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의 자유와 권리·의무이므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자랑스런 우리 조국이 진정한 인권(人權)이 보장되는 나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사회보호법의 폐지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감호자들을 흉악범으로 오인(誤認)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를 핑계로 보호감호의 폐지를 주저하는데 이것은 감호자를 흉악한 범죄자로 호도(糊塗)한 국가와 언론의 책임이므로 이제는 그 책임을 국가나 언론이 스스로 져야 할 때이지 비겁하게 그런 일부 국민의 시각을 핑계로 삼아서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자리 잡았고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모두가 사회보호법 폐지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일 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사회보호법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보호법'은 정당성을 잃은 군사정권의 정당하지 못한 절차에 의해 탄생한 악

법이 아닙니까. 개혁의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런 악법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개혁은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의 눈과 귀는 반드시 이를 심판할 것입니다.

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거창한 말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잘못된 만큼의 형벌을 받았으면 그 형벌로써 잘못에 대한 응보는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다시 잡아 가둘 수 있는 '감호소 가출소자'가 아닌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를 당하더라도 그냥 '사람'으로 대접받으며 살아갈 수만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 전과자인 감호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만 이것은 감호자 한 사람의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감호자의 부모형제, 가족, 친지, 선후배, 지인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의 인권의 척도가 되는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감호자들의 피터지는 절규와 단식, 수 천 통의 진정서와 호소문, 탄원서, 편지와 인권사회시민종교단체의 열성적인 노력,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와 연구, 그리고 국회의 실태조사와 연구에 의해 오늘날 3건의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며, 이것은 곧 국민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타 사안들과 국회 상황에 밀려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안'은 반드시 이번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법에 대한 논의가 미뤄져 사회보호법이 그 절긴 목숨을 연명하게 된다면 이는 폐지되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인권침해의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현재 감호소에 있는 1000여명의 감호자와 형기가 종료되면 감호소로 옮겨와야 할 800여명의 보호감호 병과자들, 그리고 그 가족 친지 지인들, 그리고 이땅의 양심과 인권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국회의 사회보호법 처리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이번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한다면 이들은 피를 토하며 절망할 것입니다. 국회 스스로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국회의 뜻을 저버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4년 1월 27일

보호감호소 가(假)출소자 조석영 (인) 외 315 명

첨부서류 : 서명날인부 1 부